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0 선고 2014가합503085 판결 [보증금 지급 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5. 3. 11 선고 2014나203146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0 선고 2014가합503085 판결

전 문

원고 한국환경공단

피고 건설공제조합

변론 종결 2014. 6. 18.

판결 선고 2014. 8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5,416,396원 이에 대한 2014. 2. 12.부터 2014. 8. 2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0,363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공사도급계약의 체결

1)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(이하 'STX건설'이라 한다) 및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(이하 '정인종합'이라 한다)는 출자비율 30%, 70%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. 9. 17. 원고와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2,417,200,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2)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금액은 STX건설 725,160,000원, 정인종합 1,692,040,000원이다.

나. 선급금의 지급 및 선급금 반환 보증

1)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선급금으로 STX건설에 217,548,000원, 정인종합에 725,160,000을 지급하였다.

2) STX건설은 2012. 11. 13. 위 선급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33,784,000원, 보증기간 2012. 11. 13.부터 2014. 2. 9.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. 위 보증서에 첨부된 선급금 보증약관 제1조는 "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(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)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'보증사고'라 한다)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"라고 기재되어 있다.

다. 공사 포기 및 선급금 반환 합의 등

- 1) 제1회 기성검사일인 2013. 2. 28.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기성공사금액은 323,950,000원이고, 출자비율에 따른 STX건설의 몫 97,185,000원, 정인종건의 몫 226,765,000원은 각기 선급금에서 공제되었다.
- 2) 이후 STX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2013. 4.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.
- 3) STX건설은 2013. 7. 22. 그 명의로 627,975,000원(= 지분 공사금액 725,160,000원 - 지분 기성 지급금 97,185,000원)의 잔여공사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'공사포기각서'와 120,363,000원(= 선급금 217,548,000원 - 공제금액 97,185,000원)의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동의한다는 '선급금 반환동의서'를 작성하는 한편 정인종건과 사이에 공동수급사 간의 기출자(기성) 내역이 STX건설 97,185,000원(30%), 정인종건 226,765,000원(70%) 합계 323,950,000원이고, 잔여분은 정인종건 2,093,250,000원(= 2,417,200,000원 - 323,950,000원, 100%)임을 확인하는 '기출자(기성) 내역 확인서'와 계약금액 및 출자비율을 전체 공사에 대하여 STX건설 97,185,000원(4.02%), 정인종건 2,320,015,000원(= 2,417,200,000원 - 97,185,000원, 95.98%)로, 잔여분에 대하여 정인종건 2,093,250,000원(100%)으로 변경함에 합의하는 '계약금액 및 출자비율 변경 합의서'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.
- 4) 원고는 2013. 9. 24. 피고에게 120,363,000원의 보증금 청구를 하였고, 피고는 2013. 7. 22.을 기준으로 한 STX건설의 기성대금 247,701,096원에서 원고의 하도급인에 대한 직불금액 35,099,7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4,949,604원[= 217,548,000원 - (247,701,096원 - 35,099,700원)]만이 반환될 STX건설의 선급금으로 남아있다는 이유에서 보증금 원금 4,946,604원 및 약정이자 276,467원 등의 명목으로 2013. 11. 6. 원고에게 5,223,880원을 송금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2호증의 1, 2,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의무의 발생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STX건설은 원고에게 기수령 선급금에서 217,548,000원에서 기성대금

97,185,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 120,363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액 233,784,000원의 한도 내의 보증금 120,363,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 등

1) 피고는, STX건설의 기성대금은 2013. 2. 28.의 제1회 기성검사일 이후 STX건설의 시공여부와 무관하게 STX건설이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출자비율을 0%로 변경한 2013. 7. 22.까지 공동수급체의 기성금액 중 STX건설의 변경 전 출자비율인 30%에 의하여 산정한 247,701,096원이 되고, 위 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STX건설은 2013. 7. 22. 잔여공사를 포기하면서 도급인 원고 또는 원고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정인종건과 사이에 STX건설의 기성대금을 97,185,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기성금액에 맞추어 전체 공사 및 잔여분에 대한 출자비율을 95.98%, 100%로 변경하는 한편 위 기성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. 원고 및 STX건설, 정인종건이 2013. 7. 22.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기성공사금을 정산하면서 2013. 7. 22. 변경 합의된 출자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기성금 정산 및 그에 따른 선급금 공제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, 원고 등이 STX건설이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계약자인 피고에 대하여 출자비율 변경 이전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출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207866 판결은 기성금 산정과 관련한 출자비율 변경의 합의 등이 없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).

2) 다만, 피고는 2013. 11. 6. 원고에게 보증금 중 4,946,604원을 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,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,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115,416,396원(= 120,363,000원 - 4,946,604원)이 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15,416,3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. 2. 1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

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. 8. 2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조규현

판사황성욱

판사김용현